

# 부산광역시 사하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206
----------	-----

제출일자 : 2006. 2. 9

제 출 자 : 사하구청장

## 1. 제안사유

부산광역시 사하구 국민체육센터가 건립됨에 따라 구민의 욕구에 부응하는 질 높은 공공서비스 제공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국민체육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2. 주요골자

가. 운영시설 정의(안 제3조)

○ 체육시설 : 수영장, 헬스장, 에어로빅장, 다목적체육관

○ 부대시설 : 사무실, 다목적회의실, 휴게실, 탈의실, 샤워장, 화장실, 기계실등

나. 시설 사용료의 징수(안 제6조)

○ 공익성과 수익성의 균형을 이루도록 구청장이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다. 시설의 위탁관리 및 운영(안 제8조)

○ 체육센터를 효과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체육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라. 회계관리 등(안 제12조)

○ 수탁관리자가 하는 국민체육센터의 회계운영은 독립채산제로 한다.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35조제2항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입법예고 : 2006. 1. 10 ~ 1. 31(20일간), ▷ 의견접수 및 반영현황 : 별첨

부산광역시 사하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사하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민의 건강과 건전여가 활동촉진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 국민체육센터를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부산광역시 사하구 국민체육센터(이하 “국민체육센터”라 한다)는 부산광역시 사하구 감천동 702-1번지에 둔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용자”라 함은 개인연습, 경기연습, 체력단련 등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2. “전용 사용자”라 함은 다목적체육관 전체를 일정기간 전용으로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3. “어린이”라 함은 만7세 이상 만12세 이하인 자와 초등학생인 자를 말한다.
4. “청소년”이라 함은 만13세 이상 만18세 이하인 자와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을 말한다
5. “성인”이라 함은 만19세 이상인 자를 말하며, 만65세 이상인 자는 경로대상으로 한다
6. “단체”라 함은 동일조직의 구성원이 20인 이상으로 인솔자에 의하여 동시에 입장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사업)** 국민체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생활체육의 보급 및 진흥 육성사업
2. 건전여가선용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사업
3.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사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공중에 위대한 행위를 하는 자 또는 전염성 질병이 있음이 확인된 자
2. 국민체육센터 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
3. 술에 만취된 자
4. 혼자서 자유로이 활동할 수 없는 자가 보호자 없이 입장하는 자
5. 기타 입장을 거절하여야 하거나 퇴장하여야 할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제6조(사용료의 징수)** 국민체육센터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별표 1의 사용료를 징수하며, 별표 1에서 규정되지 않은 각종 문화프로그램 사용료는 민간시설보다 저렴한 수준으로 하여 공익성과 수익성의 균형을 이루도록 구청장이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제7조(사용료의 감액)**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액할 수 있다.

1. 사용료의 100퍼센트 감액
  - 가. 사하구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 나. 공익상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행사
2. 사용료의 50퍼센트 감액
  -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
  - 나.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1급 내지 3급 장애인에 한하여 보호자 1인 포함)
  - 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3. 사용료의 30퍼센트 감액
  - 가. 만 65세이상 경로자
  - 나. 이용신청일 현재 사하구 감천1동에 1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  
(주민등록 기준)
4. 사용료의 20퍼센트 감액
  - 가.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로 별표 2와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감액 받고자 하는 자는 관련 신분증 또는 증빙서류 등을 제시 하여야 하며, 제1항 각호의 사항이 중복 해당될 경우는 이용자에게 가장 유리한 1개의 경우만 인정한다.

**제8조(국민체육센터의 위탁관리 및 운영)** ①구청장은 국민체육센터를 효과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국민체육센터의 재산관리 및 제4조의 사업을 원만하게 수행할 수 있는 체육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기관에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수탁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의 범위안에서 세부운영 프로그램별 요금을 정하여 사전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수탁관리자는 관리 및 운영에 대하여 구청장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제9조(위탁관리 재산의 범위)** ①위탁관리하는 재산의 범위는 국민체육센터 건물과 그 부대시설물로 한다.

②제1항의 재산에 대한 구체적인 범위와 신규취득 및 처분 등 관리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위탁운영의 해지)** ①구청장은 수탁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이 조례에 의한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2. 사업목적에 위반된 운영을 하였을 때
3. 위탁관리운영 협약을 위반하였을 때
4. 이 조례 및 위탁관리 운영 협약에 의한 구청장의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5. 국민체육센터의 관리 및 운영 실적이 극히 부진할 때
6. 기타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례에 의한 위탁운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수탁자의 의무)** ①수탁자는 국민체육센터를 관리·운영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국민체육센터 설치목적외의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②수탁자는 구청장의 승인없이 국민체육센터 시설물의 원형을 변경할 수 없으며, 개·보수 또는 증축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수탁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사용료는 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과 생활체육진흥 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④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이 조례에 의한 구청장의 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⑤수탁자는 구청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임대 등을 할 수 없다.

**제12조(회계관리 등)** ①수탁관리자가 하는 국민체육센터의 회계운영은 독립채산 제로 한다. 다만,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부득이한 사유로 국민체육센터운영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에는 구청장이 운영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시설 및 기자재와 기타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③수탁관리자는 매 회계연도마다 시설관리 운영에 관한 예산과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예산의 집행에 관해서는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하여 집행하고 매 회계연도 결산 종료 후 1월 이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잉여금이 발생한 경우 구청장의 지시에 따라 시설 및 기자재 등 개·보수비용으로 따로 적립하거나 구청장에게 반환한다.

④수탁관리자는 매 회계연도별로 국민체육센터 이용료 수익금 중 일부를 시설 및 기자재의 감가상각비 등으로 따로 적립하여야 한다.

**제13조(수익금의 사용)** ①구청장은 국민체육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잉여금이 발생한 경우 시설, 기자재 등 개·보수비용 및 시설확충 재원으로 우선 사용하고, 나머지 잉여금은 구 세입에 편입시켜 감천1동 지역 공공시설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②구청장은 경영성과 분석 후 수탁자가 국민체육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등으로 수입이 증대된 경우 수익금의 일부를 수탁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③운영 및 회계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손해배상 책임 등)** ①수탁자는 수탁재산의 손해와 이용자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변상할 수 있는 손해보험 및 상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하고 그 증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별표 1]

## 사하구 국민체육센터 사용료(제6조관련)

(단위 : 원)

시설별	구분	대 상	기 준	사용료	비 고	
수영장	개인	성 인	1회 2시간	3,000	- 단체는 개인사용료의 90% 적용 (20명이상)	
		청 소 년	“	2,500		
		어 린 이	“	2,000		
		월 회 원	성 인	주 4-5회		55,000
			청 소 년	“		45,000
			어 린 이	“		40,000
헬스장	개인	성 인	주 6회	40,000		
		청 소 년	“	35,000		
		어 린 이	“	30,000		
에어로빅	개인	성 인	주 6회 1회 1시간	50,000		
		청 소 년	“	45,000		
		어 린 이	“	35,000		
다목적 체육관	개인	성 인	1회 2시간	2,000		
		청 소 년	“	1,500		
		어 린 이	“	1,000		
	월 회 원	성 인	주 6회 1회 2시간	40,000		
		청 소 년	“	35,000		
		어 린 이	“	30,000		
	전용 사용	체육행사	종 일	200,000	- 냉난방 사용시는 사용료의 30% 가산 - 어린이 행사는 20% 감액 - 반일사용 대관료는 종일의 1/2 적용	
			시간당	20,000		
		일반행사	종 일	300,000		
시간당			30,000			

②시설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 등을 멸실,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원상복구를 요구하거나 그 손해배상을 청구하여야 한다.

③국민체육센터에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사건, 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제15조(감독)** ①구청장은 수탁관리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검사를 실시하며, 필요시 국민체육센터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수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를 받거나 검사결과 이 조례의 규정에 위반되거나 부당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사하구 국민체육센터 사용료 기타감액(제7조제1항제4호관련)

구	분	감액율(할인율)	비 고
장기일시 등록시	3개월	5%	
	6개월	10%	
	12개월	15%	
2종목 이상 등록시		각 종목별 10%	
유아체능단 가족 이용시		10%	
20인 이상 단체 이용시		10%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20%범위내	

## 【입법예고 관련 의견접수 및 반영현황】

### □ 의견접수 현황

#### ○ 총 3회 155명 의견접수

- ▷ 감천1동장 주관 주민공청회 개최(구의원, 주민대표 등 40명 참석)
- ▷ 동일파크 맨션 거주민 집단 의견서 제출(144세대중 114세대)
- ▷ 사상구 거주 일반인(1명, 수탁자 결정에 관한 의견)

### □ 접수의견 및 반영결과

접수의견(요구사항)	의견 제출자	검토결과 및 반영(안)
감천1동 주민에 한하여 시설 사용료 50% 감액	감천1동장 주관 주민설명회시 요구사항	시설 사용료 할인을 30%로 반영
체육시설 사용료 책정시 시중보다 50% 저렴하게 책정	감천1동 소재 동일파크맨션 입주민	시중가격보다 저렴하게 책정하고 타 지역 공공시설(부산시 국민체육센터, 올림픽 기념관 등)의 수준에서 책정
수익금중 일부를 68억원의 비율만큼 감천1동에 재투자	감천1동장 주관 주민설명회시 요구사항	발생되는 잉여금의 사용은 시설에 재투자 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하고 다음으로 감천1동 지역내 공공시설사업에 투자
68억원에 대한 수익금의 일부 감천1동에 환원	감천1동 소재 동일파크맨션 입주민	「조문(안)」 구청장은 국민체육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잉여금이 발생한 경우 시설, 기자재 등 개보수 비용 및 시설확충 재원으로 우선 사용하고, 나머지 잉여금은 구 세입에 편입시켜 감천1동지역 공공시설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체육센터 시설운영 위원회 구성시 감천1동 주민대표 참여 요구	감천1동장 주관 주민설명회시 요구사항	시설내 운영위원회 구성할 필요성 없으므로 주민요구사항 미 반영
체육센터 직원 채용시 감천1동 주민 고용요구	"	수탁자 소관사항이나 최대한 채용토록 협의(청소원 등)

접수의견(요구사항)	의견 제출자	검토결과 및 반영(안)
체육센터 일부를 감천1동 주민 문화강좌 교실로 제공	"	감천1동 주민에게 장기계속 무료로 제공하는 것은 여타 문화강좌 등 프로그램 운영에 지장을 초래함으로 반영하기 곤란함 대신 수탁자로 하여금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도록 위탁계약시 명시하여 감천1동 주민들이 다양한 문화강좌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기회제공
수영장 샤워실내 소규모 온탕 설치	"	설계변경하여 기 반영 (여자 샤워실내 온탕 3평 설치)
시설운영 위탁자 결정을 위한 심사위원 구성시 교수중심 지양하고 시설 운영 유경험자 위주 구성	사상거주 주민	위탁자 결정을 위한 심사위원 구성시 참고